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대규모 개발계획 수립 전 해당 계획이 매장유산 및 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전영향협의를 통해 국가유산 가치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설공사 지역에 국가유산의 매장·분포 여부와 해당 건설공사가 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에 대한 영향검토를 동시에 실시, 허가절차를 일원화하여 국민 불편 해소 및 국가유산 보존과 개발의 균형을 조정하는데 이바지하고자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이 제정(법률 제20284호, 2024. 2. 13. 제정, 2025. 2. 14. 시행)되었음.

이와 함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286호, 2024. 2. 13. 일부개정, 2025. 2. 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되어 있던 사항 중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문화유산 보존 영향검토 사항이 「국가유산영향진단법」으로 일원화되어 관련 조문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건설공사의 범위 문구 수정(현행 제2조 개정)

- 1) 기존 건설공사 범위 중 수목 식재·제거의 경우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 등으로 한정되는 것으로 조문이 구성되어 있으나,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영향진단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유산영향진단법」에서 건설공사의 범위를 인용하고 있는 같은 법 제3조(정의)와 충돌되므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문화유산 보존 영향 검토 절차의 폐지(현행 제7조의2 삭제)

- 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문화유산 보존 영향 검토 절차가 「국가유산영향진단법」에 일원화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생 략

라. 기 타 : 생 략

대통령령 제 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의2를 삭제한다.

5. 수목이나 대나무를 식재(植栽)하거나 제거하는 공사

제7조의2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문화유산 보존 영향검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 중인 보존 영향 검토는 제7조의2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건설공사의 범위) 법 제2조 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사는 지표(地表)의 원형을 변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2조(건설공사의 범위) ----- ----- -----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u>지정문화유산, 지정문화유산의 보호구역 또는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수목을 식재(植栽)하거나 제거하는 공사</u>	5. <u>수목이나 대나무를 식재(植栽)하거나 제거하는 공사</u>
5의2. <u>천연기념물등(「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을 말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 천연기념물등의 보호구역(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보호구역을 말한다) 또는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수목을 식재(植栽)하거나 제거하는 공사</u>	<삭 제>

6. (생략)

제7조의2(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의 문화유산 보존 영향 검토 절차) ① 건설공사의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이하 이 조에서 “인허가 행정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법 제13조제2항 전단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제21조의 2제2항 각 호의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인허가 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를 하는 경우 법 제13조제2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 3명 이상(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사

6. (현행과 같음)

<삭 제>

람이어야 한다.

1. 문화유산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2. 법 제71조에 따른 시·도문
화유산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
문위원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
른 학교의 문화유산 관련 학
과의 조교수 이상인 교원

4. 문화유산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관, 학예연구사 또는
나군 이상의 전문경력관

③ 인허가 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행이 제21조
의2제2항제1호다목 또는 라목
의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
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
고 제2항제1호 또는 같은 항 제
2호의 관계 전문가 1명 이상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관계 전문가 1명 이상을
포함한 3명 이상의 관계 전문가
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
른 학교의 건축, 토목, 환경,
도시계획, 소음, 진동, 대기오

염, 화학물질, 먼지 또는 열에
관련된 분야의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교원

2. 제1호에 따른 분야의 학회로
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3. 제1호에 따른 분야의 연구기
관에 소속된 연구원 이상인
연구자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검토
에 참여한 관계 전문가는 문화
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허가 행정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인허가 행정기관은 제1항부
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검
토한 결과 해당 건설공사의 시
행이 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
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
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인허가
행정기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의견을 들은 관계 전문가
의 2분의 1 이상이 해당 건설공
사의 시행이 제21조의2제2항 각
호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⑥ 인허가 행정기관은 제5항에 따라 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허가를 받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⑦ 국가유산청장은 인허가 행정기관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토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가유산청 역사유적과	
연 락 처	(042) 481 - 4994